

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문

『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**중대한 학교안전사고**로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 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 학교

유치원,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
지원 대상 및 기간

지원대상 | 피해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**지원기간** | 1년 범위 내(연장 가능)

*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은 꼭 공제회에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.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

*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 (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)

지원신청 기간 및 비용청구 기간

지원 신청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로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내

비용 청구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

처리 절차

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 절차	신청서 작성·제출 피해자	접수 학교안전공제회	신청내용 심의·의결 자문위원회	지원·연장 확정 학교안전공제회	결정 내용 통지 학교안전공제회	지원 대상에 확정되는 경우 치료 비용 청구 가능
치료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	지원·연장 대상자 확정 통보 학교안전공제회	치료 종결 후 비용 청구 청구인	치료 방법·비용 적정성 심의 학교안전공제회 자문위원회	결정통지 및 비용지급 학교안전공제회		

신청서류

상담 및 치료 지원 신청 시

상담·심리 치료대상자 선정 신청서(원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원본)

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원본)
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(원본)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진단서 (원본)

기타 서류(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)

치료비용 청구 시(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)

상담·심리 치료비용 청구서 (원본)

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(원본)

약제비·계산서 영수증 (원본)

청구인 통장사본

기타 서류(그 밖에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* 자문위원회 및 공제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* 신청서, 동의서, 위임장 등의 서식은 [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](#) ▶ 자료실 ▶ 보상업무 에서 출력하여 활용